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 신청 근거 마련〉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6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3.
3. 회부연월일 : 2025.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전자의 과실 없이 버스에서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버스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승객의 피해가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실질적인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의 향후 취업 및 경력 관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 등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25. 7. 10.).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은 운전자에게 장래의 취업 또는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임.

따라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등은 해당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록정보를 정정·변경·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전자 등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 포함)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정보를 정정·변경·말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을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u>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u> <u>1.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u> <u>2.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u> <u>3.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u> <u>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u>
<u><신 설></u>	

현행	개정안
⑤ (생략)	<u>실을 확인하여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변경·말소하여야 한다.</u>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4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도록 하고 있음.¹⁾

같은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은 경찰서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²⁾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 ③ (생략)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같은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4항은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³⁾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는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으로 취업하거나 전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할 때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⁴⁾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시·도경찰청에 해당 기록의 정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고,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거부처분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운전경력증명서의 증명 등)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52334판결 이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음.⁵⁾

위 판결에서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한편,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경력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도경찰청에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한 정보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해당 청구가 각하된 사례도 있음.⁶⁾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 등이 운전면허·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 등은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변경·말소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정보 기재의 오류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52334 판결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19구합15979 판결

동 판결에서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조리상 혹은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정정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 역시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등재행위 자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⁷⁾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 운전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존 행정처분의 취소 및 벌점 삭제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근거로 기록된 운전경력 증명서 상의 교통사고 내역도 함께 삭제할 수 있어 현행 법령만으로도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②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없음’ 결정이 가능한 경우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등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으로 우선해서 사건 종결하도록 지침⁸⁾하였으므로,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되는 ‘운전자가 과실이 없음에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려워, 관련 기록을 정정·변경·말소하도록 개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마.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4119(2025. 8. 22.) ‘운전자 무과실 교통사고 혐의없음 사건 종결 추진